

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559 |
|----------|-----|

2008년 11월 28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시 및 제출자 : 2008년 8월 14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8년 8월 2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08년 9월 3일) 심사보류
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08년 11월 28일) 수정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 설명자: 푸른도시국장 안승일)

가. 제안이유

-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수종교체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,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가로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금까지 가로수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의 규정을 원용해서 자치구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시행되는 수종교체·가지치기 등의 중요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에서 가로수 업무를 삭제하고 본 가로수 조례에 관리청을 지정하여 직접 통제방식으로 전환하였음.
- 자치구에서 가로수의 무분별한 수종갱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로수 수종교체(바꿔심기)나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
- 가로수 가지치기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품격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지치기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과 가지치기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음.
- 또한 가로수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되었을 경우 도로법 제67조 훼손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부담금을 징수하였으나 동 조항이 2006.12.28 폐지되었기에 본 조례에서도 훼손자부담금 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보완하여 차량 사고 등 인위적인 사고가 발생시 원인행위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.
- 아울러 원인자 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은 가로수의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삭제하였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□ 안 제7조의2(가로수 심의위원회)

- 현행 조례에서는 세종로, 시청 앞의 녹지대 설치 및 관리, 20m 이상 도로신설시의 녹지대 설치 이외의 녹지대 설치 및 관리는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그 사무가 위임되어 있음.
- 이에 따라 가로수의 바꿔심기 및 신규식재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가 가로수와 녹지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자치구와 가로수의 수종갱신 및 신규식재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, 종합적인 계획의 추진이 어려운 설정임.
- 따라서 1)가로수의 조성·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2) 가로수 바꿔심기

및 신규식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한 것임.

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이의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에 관한 1)과 2)의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
- 현재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가로수와 관련한 사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시가 통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.
- 따라서, 자치구는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사전에 시에 보고하고, 시와 협의하여 가로수 조성·관리계획을 추진하는 제도에 대한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□ 안 제11조(가지치기)

- 관리청(자치구)이 서울특별시도에서 가지치기를 할 경우,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, 가지치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종합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음.

□ 안 제20조(원인자부담금)

- 훼손자부담금은 「도로법」의 손괴자부담금에 근거한 것으로 「도로법」의 손괴자부담금은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과된 사례가 없어 2006년 12월 28일 원인자부담금에 통합되어 개정되었음.
- 이러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훼손자부담금 규정을 삭제하여 원인자부담금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나, 도로의 손괴와 가로수의 훼손은 훼손의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 동일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.
- 가로수의 경우는 도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인위적인 손괴보다는 손쉽게 훼손될 수 있어 개정안의 원인자부담금에 통합되는 것으로는 다양한 훼손 사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훼손자부담금의 삭제는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됨.

□ 안 제21조(부담금의 징수)

- 「도로법」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로수는 도로의 부속물로 가로수과 관련한 부담금은 상위법령인 「도로법」에 징수근거를 두고 있음.
- 그러나, 「도로법」에는 가산금 규정이 없어 상위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강제규정을 현행 조례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산금 규정을 삭제한 것에는 이견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7. 수정안의 요지 :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2008년도 일반회계 시설비 35억원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1) 신 · 구조문대비표 : 별첨 1

126 (제 213회-제 2차)

2) 입법예고(2008. 2. 21~ 3. 17.) 결과 : 별첨 2

3) 규제심사 대상 : 규제사무 없음

....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